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7-07

## 부 산 지 방 법 원

### 제 6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	건	2013가합13552	손해배상(기) 등
원	고	A	
피	고	B	
변	론	종	결
		2014. 6. 12.	
판	결	선	고
		2014. 6. 26.	

#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 - 가. 16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4. 6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  - 나. 2014. 4. 1.부터 2023. 5. 31.까지 매월 1,100,000원씩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 구 취 지

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인데, 원고는 2013. 2.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311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위 소송이 진행 중인 2013. 5. 29. 원고와 피고는 소송절차 외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(이하 '이 사건 합의'라고 한다)하였는데, 이후 원고는 합의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고, 관련 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신청을 모두 마쳤다.

1. 원고는 이 합의서 작성 후 바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, 가압류를 해제한다.
2. 피고는 2013. 6. 10.까지 원고에게 ① 부산 북구 C 토지 및 건물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, ②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, ③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아파트 101동 808호에 설정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2023. 5. 31.까지(120개월) 매월 110만 원씩 지급한다.
4. 피고가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, 원고는 더 이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.

다. 피고는 2013. 7. 10.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, 채권최고액 36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한편 2013. 7. 10.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0,000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감정인



## H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판단

#### 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2013. 6. 1.부터 2023. 5. 31.까지 매월 1,100,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피고가 월 약정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장래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).

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,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(민법 제395조),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이때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).

한편, 피고가 이행기 후인 2013. 7. 1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, 이행거



절이 있었던 2013. 7. 10.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50,000,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한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민법 제828조(2012. 2. 10.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는 "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었으나, 2012. 2. 10. 민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, 민법 부칙(2012. 2. 10.) 제 1조 단서는 '제828조에 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'고 규정하고 있어서, 그 이후에 행하여진 부부간의 계약은 위 조항에 기하여 취소할 수 없다.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가 그 이후인 2013. 5. 29.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달리 이 사건 합의에 취소 내지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다. 소결론

결국, 피고는 원고에게 161,000,000원(= 전보배상액 150,000,000원 + 2013. 6. 1.부터 2014. 3. 31.까지의 10개월간 약정금 11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. 6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. 4. 1.부터 2023. 5. 31.까지 매월 1,100,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7-07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박준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김두홍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구창규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4-07-07

## 부동산의 표시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  
부산 금정구 [I] 제비동 제4층 제301호  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  
부산 금정구 [I] 대 727.9㎡  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  
건물번호: 제4층 제301호  
건물내역: 73.71㎡  
(대지권의 표시)  
소유권대지권 72790분의 4295
2. (1동의 건물의 표시)  
부산 금정구 [E] [F] 아파트 제101동 제8층 제808호  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아파트  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  
부산 금정구 [E] 대 10179㎡  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  
건물번호: 제8층 제808호  
건물내역: 84.985㎡  
(대지권의 표시)  
소유권대지권 10179000분의 54759
3. (1동의 건물의 표시)  
부산 북구 [C] 제1층 제36059-2호  
철근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지하부 근린시설 및 공동주택  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  
부산 북구 [C] 대 338㎡  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  
건물번호: 제1층 제36059-2호  
건물내역: 195.37㎡  
(대지권의 표시)  
소유권대지권 3380분의 1221

-이 상-